

새해 새출발 새로운 법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운영실 실장

이제 정보산업분야에 관한 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돌입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역적 구분이 없는 무한 자유경쟁이란 새로운 경쟁 원리는 실질적인 현재의 경쟁력 우열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경쟁자는 대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는, 즉 적자생존의 원시적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다. 여기에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야 할 우리의 위기가 있다.

정보화사회는 그 핵심이 'know - how'에 있는 것 이 아니라 'know - where'에 있음을 앤핀 토플러는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생산'이 아니라 정보의 '유통'에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의 의존도가 한층 더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경쟁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정보가 있는 곳에 권력이 있다'고 까지 정보화사회 특징을 강조하고 그 시대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라는 국내외적 여건 변화는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산업정책 을 지향하도록 하였고,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정도를 초기 의 개발촉진의 단계에서 정착 및 성숙의 단계로 예정하고 모든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1995. 8. 4)을 비롯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전산망보급화장과이 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정보산업 관련법령의 개정 (1995.12.6)을 통하여 표명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 통신사업의 추진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등 6 개 기본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전산망의 보급촉진’에서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한 정보화사회’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전산망의 개념을 ‘조직망’에서 ‘정보통신체제’로 파악하며, 전자문서의 개념 도입, 그리고 ‘호환성·연동성’ 외에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 강조 및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 작업에도 나타난다.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등을 법제화하고 있다.

‘전산망의 보급촉진’에서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한 정보화사회’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전산망의 개념을 ‘조직망’에서 ‘정보통신체제’로 파악하며, 전자문서의 개념 도입, 그리고 ‘호환성·연동성’ 외에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 강조 및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 작업에도 나타난다.

소프트웨어산업 부문에도 정부의 정책을 종전의 기술개발중심에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개발 뿐만 아니라 ‘유통촉진환경의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반적 부문의 진흥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 확대하고 이와 함께 정보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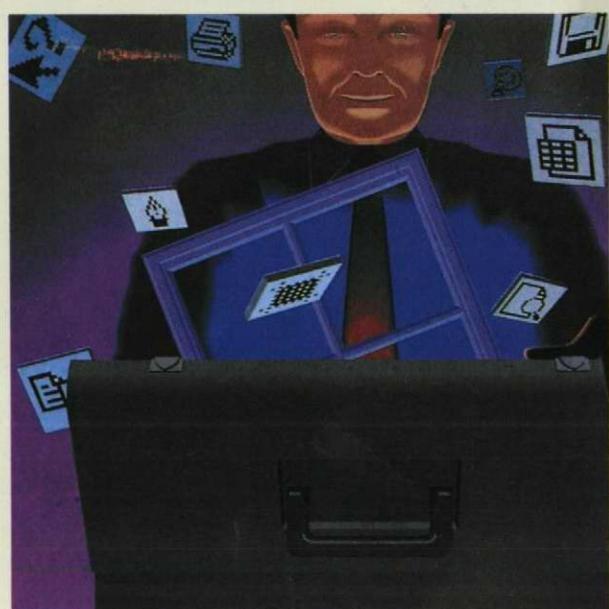
정보산업에 관한 정책방향이 개발촉진에서 정착 및 고도화로, 개별적 육성에서 종합적 육성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육성지원과 함께 조정도 행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정보생산자와 정보유통자 및 이용자가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하고, 폐쇄적 독점적 정보산업은 지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 노력 을 하게 되며, 이에 산업계는 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야 하며,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 시켜야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산업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법제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확대하여 대체하였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우수 신기술을 지정하여 창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고,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통한 인적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유통촉진환경의 조성, 기술성평가기준 고시, 개발비산정기준외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적정 대가기준 마련과 이의 원가계산에 활용 등은 정보산업계의 각종 부담을 상당한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다. 이용촉진을 위한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도입, 신고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중개업 허용도 중소업체에게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밖에 각종 지원을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해 새출발 새로운 법

마련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보산업의 종합육성지원은 다른 면에서는 정부의 정책주도와 조정을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 정부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등은 정보산업계가 그 역할분담과 협조를 효율성과 효과성 차원에서 얼마만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또한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 유지와 전산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조는 전산망 표준화작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준수하고 보완, 권고에 따를 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초고속통신망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공정경쟁 촉진에 따라 지역적 경제적 차별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정부의 구제조치에 따라야 된다.

결국 정보화촉진과 고도화는 이제 기술개발을 위한 육성과 기반조성 단계에서 보호받던 환경에서 벗어나 산업계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정책과 표준과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치열한 기술경쟁의 시대로 접어 든 것이다. 아울러 각종 지원과 혜택에 따른 의무로서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침해에 따른 배상의무가 증가된 것이다. WTO체제에 따른 국제협력 사항으로 외국에서 '87년 7월 1일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도 보호된다는 점은 부가적인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새해부터는 기술개발중심에서 전반적인 정보산업의 진흥으로, 정보산업의 육성에서 정보화사회

의 관련 구성원에 대한 균형있는 보호와 육성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대전환을 맞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흡한 정보화사회의 기반여건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세계적 추세의 정보이용 욕구와 현실여건의 변화 즉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의 강제 내지 시대적 요구는 현대인에게 정보화사회에의 적응을 강요하고 있고, 생존의 조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정보산업체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육성지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WTO체제는 국가의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내지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곧 정보산업체의 기술적 자립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무척 시급함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넓은 의미의 정보통신에 국가 표준화가 이루어 질 것이며, 국가적 표준은 물론 국제적 표준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부의 표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산업계의 종합적 대응과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추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제정과 개정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다. 정보산업 관련법령은 정책과 제도에 불과한 것이며, 정보화사회는 정보산업계가 그 일익을 담당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기관과 전담기관과 정보산업계가 그 역할분담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고, 얼마만큼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되는가 하는 것은 정보산업계의 노력과 경쟁력 강화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제도적 지원과 보장은 정보산업계가 이를 얼마만큼 실효성있도록 활용하는가 하는 업계의 주도적 노력에 그 효과가 결정된다. 관련업계의 외면은 정보화정책의 수정발전보다는 소극적 방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셋째, 정보통신의 안정성, 신뢰성 및 고도화는 이제 정보통신의 당사자인 정보생산자, 정보유통자 및 정보이용자의 권익을 모두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보산업계 위주의 정책은 빠른 속도로 지양될 것이다. 정보이용자의 보호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의 의무화는 이를 뜻한다. 제조업계에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제조물 책임도입은 정보산업계에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지표로 삼을 수가 있다. 이제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위주로 관점을 전환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정보산업계의 부담이고 고충임에는 틀림없지만, 외면할 수는 없다. 정보보호센터의 설치나, 정부차원의 이용자 피해구제는 분명히 정보산업계에게 최종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넷째, 공공부문의 정보화촉진은 공공정보의 공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곧 정보의 표준화와 호환성 확보, 원시 정보의 공유로 이어질 것이다. 정보의 생명은 신선도가 최우선이며, 정확성이 그 다음이다. 이를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호환성확보와 함께, 정보의 호환성 확보 없이는 중복되는 노력과 경비의 이중부담을 초래하며 결국 경쟁력 약화로 귀착된다.

다섯째, 정보통신은 그 영역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기기, 기술,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

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종합적으로 정의되고 있고, 또한 폭넓게 보호된다. 이는 권리자 입장에서는 그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반면에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보호나 구제에 사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 공동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정보보호센터와 같은 제도이용 등은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새해에 시행될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이를 반영한 정보산업 관련 개정법령은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총체적 고도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조정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며, 민간부문에 의한 자발적이지만 불균형한 정보산업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대의 효율성을 활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정보화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부문과 요소를 균형에 의한 안정성 확보를 피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정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산업의 인적 요소, 물적 요소, 제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성장시켜 최종적인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보의 생명은 원활한 흐름에 있다. 안정성과 신뢰성과 고도화의 달성을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다. 정보산업계가 얼마만큼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와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주역으로서 기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HC**

